

경 기 도 보

제4720호

3. 국어학자,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

4.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표 등

③ 2개 이상의 시·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은 위촉위원을 시·군별로 각각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해당 지역의 학교명을 심의한다.

제17조(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교육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사임이 있을 때

2. 주민대표와 학부모대표의 경우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당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

3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1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학습국장과 경영지원국장(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과 경영지원과장)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2.28. 규691>

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.

제19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·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제21조(입안절차) 조례 및 규칙의 입안절차는 별표 2와 같다.

제22조(위치변경에 관한 특례)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학교의 위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포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경기도 고시 제2013-110호

성남 일반산업단지(제1산업단지)지정 해제 고시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성남 일반산업단지 (제1산업단지)지정 해제하고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3. 4. 26.
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의 명칭 : 성남일반산업단지(제1산업단지)

2.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

가. 산업단지의 위치 :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

나. 산업단지의 면적 : 86,292㎡

3. 산업단지의 해제사유

가. 성남일반산업단지(제1산업단지)는 당초 시가지 외곽지역이었으나 시가지가 확산됨에 따라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주변 도시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,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나. 또한, 공장시설의 노후 및 이전으로 실질적인 산업단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기존시가지의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“2020성남도시기본계획”에 따라 분당구 동원동 소재로 대체 지정을 계획하였음. 따라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성남 일반산업단지(제1산업단지)의 지정을 해제코자 함.

경 기 도 보

제4720호

4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
 - 환원 미대상, 성남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별도 이행
 가. 산업단지 지정해제 결정 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지정 해제	성남일반산업단지 (제1산업단지)	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	86,292	감)86,292	-	1968.5.7	

- 나. 산업단지 세부시설별 지정해제 결정 조서

구분	세부시설구역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지정해제	계	86,292	감) 86,292	-	
	산업시설구역	73,949	감) 73,949	-	
	공공시설구역(도로)	12,343	감) 12,343	-	

5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성남 제1산업단지 지정 해제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(031-729-258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

경기도 고시 제2013-112호

고 시

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『도시개발법』 제4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였기에 동법 제9조, 제18조에 따라 (변경)결정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4. 26.
 경 기 도 지 사

[도시개발계획 변경]

- 도시개발사업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가. 명칭 :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
 나.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1523번지 일원
 다. 면적 : 994,756㎡
-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-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소·성명(변경없음)
 가.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(매산로 3가)/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
 나. 성명 : 경기도지사·경기도시공사장
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(변경)
 가. 시행기간(변경)
 - 기정 : 2004년 1월 5일 ~ 2013년 12월 31일
 - 변경 : 1단계(2004년 1월 5일 ~ 2013년 6월 30일)
 2단계(2004년 1월 5일 ~ 2014년 12월 31일)
 나. 시행방법 : 수용·사용에 의한 방식(변경없음)